

경운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과 교육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우리대학교는 도덕정신함양의 건학이념 아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품성을 바탕으로 지역 및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전문지식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적 가치관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0.14.><개정:2016.02.29.>

제3조 <삭제:2016.02.29.>

제3조의2(인재상) 우리대학교는 미래시대를 이끌어갈 사회친화적 실용인재를 인재상으로 한다.

1. 사회친화적 인재 : 학문적 식견, 다름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및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휴머니즘에 바탕한 자기주도적인 사회성을 가진 인재
2. 실용 인재 : 현장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상황에 맞춰 창의적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용성과 글로벌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신설:2018.01.16>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우리대학에 설치하는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별표 1】과 같다. 다만, 제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할 수 있다.

- ② 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정원의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다.<신설:2018.01.22.>

제2장 편 제

제1절 교직원

제5조(교직원 및 임무) ① 우리대학교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기타 비전임 교원 및 조교, 직원 등을 두며, 교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10.14.>

<개정:2018.01.16><개정:2018.02.21>

1. 정년계열 전임교원(정년계열 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
 2.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교육연구 중점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원, 외국인 교원 등)
- ② 총장은 대내외적으로 우리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며,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8.01.16>

- ③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 ④ 직원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⑤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한다.

제5조의 2(산학협력중점교원) ①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을 임용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신설:2018.01.22>

제6조(겸임교원 등) ① 제5조의 교직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객원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산학, 연구 및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2018.01.16><개정:2018.02.21>

- ②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매주 12학점 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 구분별 및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7.03.01.><개정:2018.02.21>

제8조(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 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교육조직

제9조(단과대학) ① 우리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을 둔다.

1. <삭제:2016.12.01>
2. <삭제:2016.12.01>
3. <삭제:2016.12.01>
4. <삭제:2016.12.01>
5. <삭제:2016.12.01>
6. <삭제:2016.12.01>
7. 벽강교양대학<신설:2016.02.29.><개정:2016.05.19>
8. 항공서비스대학<신설:2016.05.19>
9. 항공공과대학<신설:2016.05.19>
10. 간호보건대학<신설:2016.05.19>
11. 사회안전대학<신설:2016.05.19>

- ② 대학에 학부, 학과 또는 부속기관을 두고 학부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2018.01.16>

제10조(대학원) 우리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두며, 대학원 학칙과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2.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제11조(대학(원)장, 학부(과)장, 전공주임 등) ① 우리대학교에 설치된 대학(원), 학부(과)에 대학(원)장, 학부장, 학과장, 원장, 센터장 등을 둘 수 있으며, 학부에 설치되는 전공단위에는 전공주임을 둘 수 있다.<개정:2018.01.16>

②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학부장 및 학과장은 소속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3절 행정조직

제12조(직제) ① 우리대학교 학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사무처, 인재개발처, 교육지원처, 인재개발처, 산학연구처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두며, 총장직속기구에 감사팀, 국책사업추진본부, 대학발전추진단, 항공특별보좌관 및 비행교육원, 대학일자리센터, 예비군대대를 두며, 부총장 직속기구에 교육선진화추진단을 둔다.

<개정:2014.03.01.><개정:2016.02.29.><개정:2016.12.01.><개정:2017.09.01.>

<개정:2018.01.16.> <개정:2018.08.01.>

② 전항의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2016.02.29.><개정:2018.01.16>

③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16.02.29.>

④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부속 및 부설기관

제13조(부속기관) ① 우리대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15.02.26.> <개정: 2016.02.29.> <개정: 2017.09.01.><개정: 2018.08.01.>

1. 건설단
2. 교수학습지원센터
3. 대학미디어센터
4. 동해연수원
5. 디자인센터
6. 무인비행교육원

7. 벽강아트센터
8. 벽강중앙도서관
9. 보건실
10. 사회봉사지원센터
11. 스토리라이팅센터
12. 인터내셔널센터
13. 재난안전연구센터
14. 전산정보센터
15. 창업교육센터
16. 창업보육센터
17. 취업지원센터
18. 커리어개발지원센터
19. 평생교육원
20. 학생생활관
21. 학생생활상담센터
22. 항공기술교육원
23. 현장실습지원센터
24. KUST센터

②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 등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부속기관 이외에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④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은 “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2016.02.29.>

제14조(부설기관) <항삭제:2015.02.26>

제15조(부설연구소) ① 우리대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설연구소를 둔다.

<개정:2017.09.01.><개정: 2018.08.01.>

1. 군사학연구소
2. 산학융합연구소
3. 항공기술연구소
4. 진로교육연구소

② 제1항의 부설연구소 이외에 필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5절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제16조(산학협력단) ① 우리대학교에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17조(학교기업) ① 우리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2 <삭제:2017.09.01.>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수업, 재학연한, 학년, 학기

제18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우리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과, 재입학 및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부(과)의 수업연한에서 이수한 학점에 의하여 인정받은 학년(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2016.02.29.>

제19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매 학년도의 학기는 다 학기제로 운영하고 제1학기, 제2학기로 구분하되 별도의 여름학기, 겨울학기를 둘 수 있으며 학기의 시작은 매 학년도의 학사력으로 정한다. <개정:2017.03.01.>

③ 제2항과는 별도로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④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계절학과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학습형태, 수업일수, 휴업일

제20조(수업 등) ① 교과목 단위별로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출석학습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학습 외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자율학습, 산업체 현장실습 및 다중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이러닝, 가상강좌 등) 등에 의하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매체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2018.01.16>

③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2018.01.16>

④학생의 교육효과와 현장실무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형이론교육(IAC·IFC) 등 다양한 학습형태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2018.01.16>

제2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거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중수업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제47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8.01.16>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22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개교기념일
5. 법정공휴일

②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할 수 있다.

제3절 입학(편입학, 재입학, 전부(과) 포함)

제23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제24조(입학자격) 우리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2018.01.16>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25조(입학지원) ① 우리대학교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방법 등 기타 입학지원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입학전형) ① 우리대학교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개정:2018.01.16>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입학허가 및 등록) ① 입학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개정:2018.01.16.>

② “삭제” <개정:2018.01.16.>

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

⑤ 입학이 허가된 후 부정입학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학취소하며, 등록금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8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개정:2018.01.16.>

②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8.01.16.>

제28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①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2.26>

제29조 <삭제:2018.01.16>

제30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여석범위내에서 모집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개정:2018.01.16.>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편입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2018.01.16.>

③ <삭제:2018.01.16>

④ <삭제:2018.01.16>

⑤ <삭제:2018.01.16>

제31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해당학부(과) 정원 내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개정:2017.03.01.>

③ 재입학의 방법과 재입학자의 자격 및 취득학점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전부(과)) ① 총장은 특별한 사유로 전부(과)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부(과)의 자격, 시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33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품행이 불량하거나 정상적인 수학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어 지도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직권 휴학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4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의 휴학기간은 군복무를 위하여 수학하지 못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2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의 휴학, 제33조 2항에 의한 권고휴학, 출산을 위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초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학년 또는 그 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3. 타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삭제:2017.03.01.>
6. <삭제:2012.12.13.>

제5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38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 연기 및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4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2018.01.16>

제39조(수강신청) ①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강좌가 폐강되지 않는 한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제40조(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범위) ①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2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삭제:2014.02.01.><개정:2017.03.01.>

②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F등급

이 없는 평점평균 4.0 이상인자는 매학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2014.02.01.><개정:2015.2.26.><개정:2017.03.01.>

③ 월격강좌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로 한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학기당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⑤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계절학기 수강신청) ① 계절학기는 별도학기로 운영하며 계절학기에 의한 수강신청은 매 학기별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이수

제1절 교육과정 및 이수단위

제42조(교육과정심의 및 운영) ① 우리대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운영공동체(2WINNER) 실행위원회(전공), 벽강교양대학 운영위원회(교양)를 거쳐 교육운영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2014.03.01.><개정:2016.02.29.><개정:2016.5.26.><개정:2017.09.01.>

<개정:2018.01.16.>

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교육과정 구성) ① 우리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비교과과정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 및 교양과목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10.14.><개정:2018.01.16.>

②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교직과정을 운영하며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의 성취를 위하여 학습대상자의 목적상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국내 및 국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내 및 국외 타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 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3.10.14.>

② 국내 및 국외 타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10.14.>

제45조(학·석사 연계과정) ①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인증 프로그램(교육과정)의 설치 운영) ① 각 학부(과)에서는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 프로그램(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7조(이수단위)** ① 각 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2018.01.16>
- ② 한 학기당 1학점의 학습시간은 학생의 소요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8.01.16>
1. 이론 교과목은 15시간
 2. 실험실습 및 체육은 30시간, 임상실습 45시간
 3. 현장실습수업 30시간 이상 <개정:2013.10.14.><개정:2018.01.16.>

제2절 교육과정 이수기준

제48조(교양교육과정) ① 교양과목은 핵심교양, 배분교양, 심화교양으로 구분한다. <개정:2016.5.26.>

② 교양과목 최소 이수학점은 학부(과) 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6.02.29>

제49조(전공교육과정) ① 전공과목은 통섭형전공, 전공기초, 전공핵심, 전공심화로 하며, 전공의 경우 산학실무, 산학PBL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6.02.29><개정:2017.03.01.>

②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6.02.29>

③ <삭제:2017.03.01.>

제50조(주전공의 이수) ① 학생이 입학한 학과를 주전공(제1전공)이라 한다.

②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자는 반드시 주전공(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2017.03.01.>

제3절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제51조(복수전공, 부전공 및 융합전공, 연계전공) ①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주전공 외에 다른 학부(과)에서 개설되는 전공교과를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학과가 서로 연계, 융합하여 제공하는 연계 및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 융합전공은 2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다.<개정:2015.02.26>

④ 보건의료계열의 안경광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임상병리학과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⑤ 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인정)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신청한 자가 규정에 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관련 학위를 수여한다.

제53조(부전공의 인정) 부전공 이수자는 졸업증서에 부전공 이수사항을 표기한다.

제4절 수업 및 평가

제54조(수업 및 시간표) 매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의하며 수업과목과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확정한다.

제55조(학업성적의 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교과목 단위의 시험으로 한다.

② 각 교과목의 평가는 정기시험, 수시시험 및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③ 수시시험은 학습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학습기간 중 수시로 실시한다.

④ 정기시험은 이수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한다.

⑤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결석일수가 1/3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으며, 성적은 F (과목낙제)로 처리한다. 단, 취업에 따른 졸업예정 학기의 결석의 사유는 공인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2016.10.12>

제56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이나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6.0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성적에 따른 등급 부여 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절대평가가 필요한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등급에 대한 성적의 배점 및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등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한다.

④ 성적등급 및 평점부여가 적정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인정 Satisfactory(S), 미인정 Unsatisfactory(U)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2015.02.26>

⑤ 기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C+ 이하의 교과목에 한해 매학기 6학점까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성적은 무효로 처리하며, 최대 A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2015.02.26>

⑥ 성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등급	배점	평점
A+	100~95	4.5
A	94~90	4.0
B+	89~85	3.5
B	84~80	3.0
C+	79~75	2.5
C	74~70	2.0
D+	69~65	1.5
D	64~60	1.0
F	59이하	0.0

제57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2015.02.26>

제58조(성적정정) ① 이미 인정된 성적이 교수의 착오 또는 학생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다만, 교수의 착오로 인한 성적정정에는 담당 교수의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삭제:2014.02.01.>

제59조(성적평가관리위원회) ① 학생의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에 성적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성적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우리대학교 소속 교원과 학계 및 산업체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평가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타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실습 등을 당해 교과목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3. 평가와 관련된 자료수집, 평가기록, 전산처리 등 평가사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0조(학점인정) ① 재학 중 국내·외 타 대학(이러닝강좌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심의를 거쳐 우리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2017.09.01.>

② 우리대학과 상호 학점인정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협약에 따라 인정한다.

③ 우리대학 재학생이 병역의무에 의한 군복무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3항의 규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학기당 3학점이내로 하며 최대 12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⑤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내 사업단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 연구, 실습을 이수한 경우 성적평가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련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한다.
- ⑥ 재학 중 해외어학연수, 봉사활동 등으로 취득한 학점에 대해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⑧ 입학 전 본교에서 시행하는 신입생 특별프로그램 등에 참가하여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총3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2016.10.12.><개정:2017.03.01.>
- ⑨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UP)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총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7.09.01.>

제4장 수료 및 졸업

제61조(졸업학점) 우리대학교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학부(과)에 따라 120학점에서 140학점 이상으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이수지침에 따른다.<개정:2016.02.29>

제62조(학년수료 및 졸업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6.02.29.>

학 년 \ 졸업학점	120학점 (예체능계열)	130학점	140학점 (간호학과)
제1학년	30	33	35
제2학년	60	65	70
제3학년	90	98	105
제4학년	120	130	140

② 해당학년까지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전학의 학년당 수료학점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2015.02.26>

제63조(졸업종합시험 등) ① 학부(과) 또는 전공(복수전공 포함)별로 졸업종합시험, 졸업논문,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작품설계)발표 등의 졸업요건을 부과한다.

② 졸업종합시험 등에 불합격한 사람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③ 졸업종합시험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5.02.26>

제63조의2(졸업자격인증제) ① 학생은 제62조의 졸업학점과 제63조의 졸업종합시험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졸업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어인증
2. 자기주도학습역량인증
3. 봉사인증

② 졸업자격인증제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2015.02.26>

제64조(졸업이수기준 및 학위) 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한 자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단, 졸업이수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졸업연기를 신청하고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졸업연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7.09.01.>

② 졸업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학칙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61조를 충족한 자
2. 학칙 제63조를 충족한 자
3. 졸업인증제 기준을 충족한 자
4. 학부(과)별로 정한 졸업내규를 충족한 자

③ 전항 제3호의 졸업인증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전항 제4호의 학부(과)별 졸업내규는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다.

⑤ 졸업학위는 매년 2회(2월과 8월) 수여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10.14.<개정:2015.02.26>

제64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①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삭제:2017.03.01.>

제65조(조기졸업) ① 계절학기를 제외한 7학기에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매학기 4.2 이상인 자로서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생활동

제66조(총학생회 설치) ① 학생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에 경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우리대학교 학생은 우리대학교에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③ 총학생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총학생회 회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67조(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간부 선출) ① 총학생회의 간부가 될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과락 없이) 평균 B학점(평점 3.0)이상이어야 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에 회부되어 있는 자는 총학생회의 간부가 될 수 없으며, 간부임기 중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총학생회의 간부로 당선 또는 선임된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총학생회의 구성 또는 활동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간부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 이하 간부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⑤ 기타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의 임원선출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자치기구에서 정한다.

제68조(효력정지)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69조(총학생회비) ① 총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비는 학생 자율로 집행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에는 학교의 승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0조(학생활동 및 단체조직) ①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외의 활동을 금한다.

③ 총학생회 등 재학생 단체 활동은 교육 목적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1조(학생 활동금지) ①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과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사용 등으로 수업, 연구 및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또한, 입학 전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였거나 정치활동을 한 자는 입학과 동시에 사퇴하고, 그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운영권, 행정권, 교권에 관하여 일체의 사항을 관여할 수 없다.

제72조(학생상담 및 지도) ① 총장은 총학생회 활동의 제반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5.02.26>

제7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또는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및 시상의뢰
4. 외부인의 학내 초청 및 시설물 이용

제74조(간행물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편집, 제작되어야 하며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포상과 징계

제75조(포상) 총장은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선동한 자
 4. 학교의 명예 또는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국가 또는 저명인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6. 학교시설, 비품, 도서 등을 파손 절취한 자
 7.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반성문,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징계절차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납입금 및 장학금

제77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까지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이하 “납입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은 학기단위로 징수한다.

③ 우리대학교의 규정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와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경우 학점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2017.03.01.>

제78조(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 또는 관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2018.01.16>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자(휴학자 포함)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납입금 반환액 산정의 기준일은 재학중인 경우 자퇴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학 중인 경우 휴학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9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0조(납입금 감면불가)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은 결석, 징계 등으로 인하여 출석이 정지된 경우에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81조(실험실습비 별도 부과) 실험과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시 실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②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에서 학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④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대학평의위원회 및 교수회

제83조(대학평의위원회) ① 우리대학교에 교육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이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84조(교수회 구성) 우리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2013.10.14.>

제85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 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교수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위원회

제86조(교무위원회) ① 우리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2014.03.01.>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2. 교수회의 위탁을 받은 사항
3.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4. 대학, 학부(과) 및 부설 소속기관의 설치와 폐지
5. 학칙 및 기타 중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6. 입학, 수료 및 졸업
7. 기타 교무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제87조(기획위원회) ① 우리대학교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제규정의 제정, 개폐 등의 조사연구 및 정비를 함에 있어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8조(산학협력위원회) ①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교환을 통한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 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
2.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
3. 대학교육 참여
4.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협의 자문
5.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협조
6.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
7. 교수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견학
8. 기술개발 공동연수
9. 산업기술 정보수집
10. 산학협력기구 확보(장학금, 연구비 기타)
11.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비는 외부인사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9조(기타 위원회) 우리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공개강좌, 특별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

제90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① 우리대학교에 교양, 학술, 실무에 대한 지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1조(시간제 등록) ① 열린교육 사회체제와 평생교육의 실현을 목적으로 산업체근로자 및 일반인의 교육확대를 위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고등학교성적, 면접고사 및 산업체경력으로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2조(학점은행제도에 따른 학위수여) ① 학점은행제하의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을 130학점이상 취득한 자가, 85학점 이상을 우리대학의 시간제 등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정의 졸업종합시험을 거쳐 해당 전공분야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장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제93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모집단위별 정원, 명칭 및 학위명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법 제8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육과정은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운영한다.

④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학칙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를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선발한다.

⑥ 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다만, 전형방법 또는 선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⑧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 일수는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⑨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최소 1년 6개월)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 ⑩ 계약학과와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 ⑪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⑫ 기타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학사운영규정·기타 학사 관련규정 및 계약학과 계약서, 계약학과 등록금약정서 등에 따른다.

제12장 자체평가

- 제94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정보고시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학칙개정

- 제95조(개정제한권)** 학칙개정은 교무위원 과반수 또는 총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96조(개정안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개정의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7조(개정안의 의결과 확정 공포)** ① 교무위원회는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찬성을 얻은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60일 이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14장 기타

- 제98조(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9조 (준용)** 이 학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2018.01.16>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의 적용)** 이 학칙은 2012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① 고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8988호, 2008.3.28> 제4조 “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2018년 2월말까지 6년간 산업대학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2012년 3월 1일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칙과 규정을 적용한다. 단, 수업, 학사,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일반대학 체제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이수하고 개정되는 일반대학 학칙에 의한 졸업자격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대학 학칙을 적용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중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설립한 해당 일반대학에 정월 외로 편입학할 수 있다.
 - ④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 또는 학기에 복학한 경우에는 해당 신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⑤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의 모집단위명으로 수료 또는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칙 개정 이후에 복학한 자로서 해당학년에 입학당시의 모집단위가 개편된 경우에는 변경된 모집단위로 졸업할 수 있다.
 - ⑥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대학 존속기간 내에는 종전 재입학 관련 규정에 의거, 존속기간 이후에는 일반대학 재입학 관련 규정에 의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별표 1】신입생 전형은 2013년도부터 적용한다.
3. **(학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 한방지원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보건바이오학부로 본다.
4. **(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 입학한 예체능대학 멀티미디어학과 학생은 IT에너지대학 멀티미디어학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별표 1】신입생 전형은 2014학년도 모집인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부터 입학한 의료경영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의료경영학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9조(단과대학) 단과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일반대학으로 입학한 보건대학 간호학과 학생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5년 3월1일부로 시행한다.
 - (1) 2012학년도부터 예체능대학 사진영상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IT에너지대학 사진영상학과로 본다.
 - (2) 2012학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 아동사회복지학부 입학한 학생은 모든 소속 전공을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소속 전공으로 본다.
 - (3) 2012학년도부터 예체능대학 경호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경호스포츠대학 경호학부로 본다. 단, 2012년~2014년 입학한 학생은 경호학부 경호학전공, 무도학전공, 태권도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으며, 경호보안전공, 경호무도학전공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이수 할 수 없다.
 - (4) 2012학년도부터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경호스포츠대학 사회체육학부로 본다. 단, 2012년~2014년 입학한 학생은 사회체육학부 사회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 전공만 1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2015년이전 입학생은 사회체육학과를 1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 (5) 2015학년도 입학생은 2015학년도 이전 모집단위의 멀티미디어학과, 사진영상학과 경호학부 경호학전공, 경호학부 무도학전공, 사회체육학부 사회체육학전공, 사회체육학부 경기지도학전공에 대하여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이수 할 수 없다.
- (6)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전공, 디지털영상전공, 사회체육학과, 보건바이오학과를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이수 할 수 없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별표2]학부(과)별 수여학위 구분표(학칙제64조제1항관련) 경과조치
2012학년도부터 입학한 경호학부 경호학전공을 경호보안학전공으로 본다.
2012학년도부터 입학한 경호학부 무도학전공을 무도지도학전공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별표1】신입생 정원(1학년)은 2017학년도 모집부터 적용한다.
- 2. 2016년도까지 입학한 재적생은 2023년 2월까지 기존 학부(과)에 존속하며, 이후 학생 의사에 따라 전부(과) 한다. <개정:2016.12.01>
(단,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 3.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학업성적의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 6항의 출석인정은 2016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2016년도까지 입학한 모바일공학과, 신소재에너지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항공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항공공과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2016년도까지 입학한 건축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관광학부(소속전공), 컴퓨터공학과, 보건바이오학과, 보건바이오학부(소속전공) 재적생은 항공서비스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2016년도까지 입학한 안경광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임상병리학과, 의료경영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재적생은 간호보건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2016년도까지 입학한 경찰행정학부, 군사학과, 경호학부,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부(소속전공), 사진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멀티미디어학부(소속전공) 재적생은 사회안전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3. 【별표 2】 학부(과)별 수여학위 구분표의 수여학위명 적용은 2016년 12월 1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폐지에따른경과조치) 2017학년도 모집정지된 안경광학과, 보건바이오학과(부), 건축학과(부), 멀티미디어학부 디지털영상전공 입학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원활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2023년도 2월까지 학과를 존속한다.
 - (2) 전 호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3)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희망하나 학과 존속기간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과 폐지 전의 학칙과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 받거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9학년도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의 모집인원(학칙제4조제1항관련)

1. 신입학 정원(1학년)

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	
		주간	야간
향공대 공과대학			
향공대 서비스대학			
간호대 간호대학			
사안대 회전대학			
계	1,184	1,184	

【별표 1】

2017학년도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의 모집인원(학칙제4조제1항관련)

1. 신입학 정원(1학년)

구 분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주간	야간
항공 대학	항공기계공학과	100	
	항공전자공학과	60	
	항공정보통신공학과	60	
	항공신소재공학과	40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60	
	무인기공학과	52	
항공 서비스 대학	안전방재공학과	40	
	항공산업보안학과	40	
	항공운항학과	40	
	항공관광학과	44	
간호 보건 대학	간호학과	150	
	물리치료학과	50	
	작업치료학과	40	
	치위생학과	65	
	임상병리학과	50	
	의료경영학과	30	
	상담복지학과	30	10
사 회 학 대	군사학과	40	
	경찰행정학과	40	
	경호학부	40	33
	사회체육학과	40	
	멀티미디어학과	30	
계	1,184	1,141	43

【별표 1】

2016학년도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의 모집인원(학칙제4조제1항관련)

1. 신입학 정원(1학년)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야간
I T 에너지 대학	컴퓨터공학과		40	
	모바일공학과		40	
	신소재에너지학과		50	
	건축학과		4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전공	35	
		디지털영상전공	25	
항공 대학	항공전자공학과		40	
	항공정보통신공학과		40	
	항공관광학부	항공승무원서비스전공	60	
		관광호텔외식경영전공		
	항공운항학과		30	
보건 대학	안경광학과		40	
	물리치료학과		50	
	작업치료학과		40	
	치위생학과		65	
	임상병리학과		50	
	보건바이오학과		40	10
	의료경영학과		40	
간호 대학	간호학과		150	
사회 과학 대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	87	
		경찰법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50	10
		사회복지학전공		
군사학과		40		
경호 스포츠 대학	경호학부	경호보안학전공	75	23
		무도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과		40	
계	1,210		1,167	43

【별표 1】

2015학년도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의 모집인원(학칙제4조제1항관련)

1. 신입학 정원(1학년)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야간
I T 에너지 대학	컴퓨터공학과		40	
	모바일공학과		40	
	신소재에너지학과		50	
	건축학과		4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전공	35	
		디지털영상전공	25	
항공 대학	항공전자공학과		40	
	항공정보통신공학과		40	
	항공관광학부	항공승무원서비스전공	60	
		관광호텔외식경영전공		
	항공운항학과		30	
보건 대학	안경광학과		40	
	물리치료학과		50	
	작업치료학과		40	
	치위생학과		65	
	임상병리학과		50	
	보건바이오학과		40	10
	의료경영학과		40	
간호 대학	간호학과		150	
사회 과학 대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	87	
		경찰법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50	10
		사회복지학전공		
군사학과		40		
경호 스포츠 대학	경호학부	경호보안학전공	75	23
		무도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과		40	
계	1,210		1,167	43

【별표 1】

2014학년도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의 모집인원(학칙제4조제1항관련)

1. 신입학 정원(1학년)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야간
IT에너지대학	컴퓨터공학과	40	
	모바일공학과	40	
	신소재에너지학과	50	
	건축학과	40	
	멀티미디어학과	4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관광학부	60	
	항공전자공학과	40	
	항공정보통신공학과	40	
보건대학	안경광학과	50	
	물리치료학과	40	
	간호학과	150	
	작업치료학과	40	
	치위생학과	65	
	임상병리학과	50	
	보건바이오학부	40	10
	의료경영학과	50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부	114	
	아동사회복지학부	70	10
	군사학과	40	
예체능대학	경호학부	100	23
	사회체육학부	50	
	사진영상학과	40	
계	1,322	1,279	43

【별표 1】

2013학년도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의 모집인원(학칙제4조제1항관련)

1. 신입학 정원(1학년)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야간
IT에너지대학	컴퓨터공학과	40	
	모바일공학과	40	
	신소재에너지학과	50	
	건축학과	40	
	멀티미디어학과	4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관광학부	60	
	항공전자공학과	40	
	항공정보통신공학과	40	
보건대학	안경광학과	60	
	물리치료학과	38	
	간호학과	150	
	작업치료학과	40	
	치위생학과	50	
	임상병리학과	50	
	보건바이오학부	40	10
	의료경영학부	50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부	120	
	아동사회복지학부	70	10
	군사학과	40	
예체능대학	경호학부	110	23
	사회체육학부	50	
	사진영상학과	40	
계	1,331	1,288	43

【별표 1】

2012학년도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의 모집인원(학칙제4조제1항관련)

1. 신입학 정원(1학년)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야간
IT에너지대학	컴퓨터공학과	40	
	모바일공학과	40	
	신소재에너지학과	50	
	건축학과	4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관광학부	50	
	항공전자공학과	40	
	항공정보통신공학과	40	
보건대학	안경광학과	80	
	물리치료학과	30	
	간호학과	150	
	작업치료학과	40	
	치위생학과	40	
	임상병리학과	50	
	한방자원학부	50	10
	의료경영학부	50	10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부	120	
	아동사회복지학부	70	10
	군사학과	30	
예체능대학	경호학부	120	20
	사회체육학부	50	
	멀티미디어학과	40	
	사진영상학과	40	
계	1,340	1,290	50

【별표 2】

학부(과)별 수여학위 구분표(학칙제64조제1항관련)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수여학위명	
항공대 공과학	항공전자공학과		공학사	
	항공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항공기계공학과		공학사	
	신소재에너지학과		공학사	
	항공신소재공학과		공학사	
	모바일공학과		공학사	
	항공소프트웨어학과		공학사	
	무인기공학과		공학사	
항서비스대 공과학	건축학과		공학사	
	항공운항학과		공학사	
	항공관광학부	항공승무원서비스전공 관광호텔외식경영전공	경영학사	
	항공관광학과		경영학사	
	안전방재공학과		공학사	
	항공산업보안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보건바이오학과		이학사	
	보건바이오학부	보건환경학전공		이학사
		보건교육사전공		
한방자원학전공				
간보대 보건학	안경광학과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보건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의료경영학과		경영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문학사
		사회복지학전공		
	상담복지학과		문학사	
사안대 회전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	행정학사	
		경찰법학전공	법학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군사학과		군사학사	
	경호학부	경호보안학전공		경호학사
		무도지도학전공		체육학사
		태권도전공		체육학사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사	
	사회체육학부	사회체육학전공		체육학사
		경기지도학전공		
	사진영상학과		미술학사	
	멀티미디어학과		디자인학사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전공		디자인학사
디지털영상전공				

【별표 3】

계약학과의 모집단위별 정원, 명칭 및 학위명(학칙제93조제2항관련)

명칭	정원(명)	학위명

【별표 4】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